

2025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사례집

2026. 4.



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이 사례집은 AI Tool을 활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목 차

I. 개요

- 1. 목적 및 추진경과 1
- 2. 회계감리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2
-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4
- 4. 주요 점검 항목 5

II. 2025년 회계감리 주요 점검 사례

- 1. 유형별 지적 사항 6
- 2. 점검 항목별 오류사례 7

I. 개요

1. 목적 및 추진 경과

1) 추진 목적

-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부속기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회계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2) 추진 경과(최근 10년)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0개에 대한 회계감리 실시
- 대학 187개, 전문대학 115개, 대학원대학 39개, 원격대학 9개 실시
- 2025년 총 30개교(대학 14개, 전문대학 10개, 대학원대학 5개, 원격대학 1개) 회계감리 실시

< 연도별 사학기관 회계감리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개)

연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합계
2016	8	5	1	1	15
2017	12	6	1	1	20
2018	13	9	2	1	25
2019	17	11	2	-	30
2020	20	13	6	1	40
2021	27	15	7	1	50
2022	34	17	8	1	60
2023	26	18	5	1	50
2024	16	11	2	1	30
2025	14	10	5	1	30
합계	187	115	39	9	350

< '25년 회계감리 추진 경과 >

1

준비단계 ('25년 3월~6월)

- '25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기본계획 교육부 안내 — '25.3.26.
- '25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실행계획 승인 — '25.3.27.
- '25년 사학기관 회계점검단 선정 — '25.6.2.
- '25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대상교 확정 — '25.6.9.

2

수행단계 ('25년 6월~10월)

- 사학기관 회계감리단 사전교육 실시 — '25.6.11.
- 사학기관 회계감리(서면 및 현장) 수행 — '25.6.30.~10.29.

3

종료단계 ('25년 11월~ '26년 2월)

- 사학기관 회계감리 보고서 최종 검수회 개최 — '25.11.3.~7.
- 회계감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25.11.21.~27.
- 회계감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에 대한 검토 — '25.12.1.~26.1.16
-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 개최 — '26.2.13

2. 회계감리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1

회계감리단 구성방법

-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회계감리단 구성
- 총 40명 선정(공인회계사)
- 외부 전문가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조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공인회계사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수습기간 포함) 등 조건에 부합한 자로 공모

2

대상교 선정 방식

- **재정규모** : 학교법인의 유형별 비중에 맞춰 재정 규모에 따라 대/중/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선정
- **제외대상** : 교육부 감사 및 회계감리·실태점검 既 수감교, 제주특별자치도관할 대학, 외부 감사인 지정제 선정 법인 등
- **우선선정** : 회계감리 및 실태점검 수검신청 학교 법인, 전년도 결산 미제출교, 학교법인 책무성 불이행기관, 감리미수검 학교법인 우선대상 선정
- **감사위험이 높은 상위 기관 선정**
- **민원 및 비리제보 등 감리가 시급한 기관**
- **무작위 표본추출 20%**

< 감사 위험도 평가 방식 >

구분	가중치	비고
감사보수	40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 이용
외부회계감사 투입시간	40	2023 결산자료 및 2024 외부 감사계약 체결 수합 자료 이용
외부회계감사법인의 교체빈도	20	-

< '25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대상교 현황 >

학급	재정규모	학교법인(대표대학)	개교
대학	대규모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 선목학원(대구가톨릭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포항공과대학교)	3
	중규모	강남학원(강남대학교), 박영학원(신라대학교) 선학학원(선문대학교), 우석학원(우석대학교)	4
	소규모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금강학원(유원대학교) 성모학원(부산가톨릭대학교), 송강학원(광주여자대학교) 송원대학교(송원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영남신학대학교) 회당학원(위덕대학교)	7
대학원	-	국제법률경영학원(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동방대학교(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교(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우천학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문화학원(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전문	대규모	학산학원(동서울대학교), 한별학숙(대구대학교)	2
	중규모	국제대학교(국제대학교), 송희학원(강동대학교) 재능학원(재능대학교), 창성학원(대덕대학교), 충청학원(충청대학교)	5
	소규모	송호학원(송호대학교), 양남학원(광양보건대학교) 예운학원(성운대학교)	3
원격	-	태재학원(태재대학교)	1

※ 대학 법인 규모 구분 기준(대 2,000억 이상, 중 600억 이상, 소 600억 미만), 전문대학 법인 규모 구분 기준 (대 450억 이상, 중 200억 이상, 소 200억 미만)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1 추진계획 수립

-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

2 회계감리단 구성

- 회계감리단 구성 계획 수립
- 회계감리단 공모 접수 및 심사
- 회계감리단 단원 확정

3 감리대상 선정 및 안내

- 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최종 30개 사학기관 선정
- 30개 사학기관에 회계감리 수행 통보 및 안내 (서면/현장점검 제출 자료, 일정 등)

4 서면및현장점검수행

- 사학기관 자체 점검표 및 회계감리 관련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 회계감리 실시
- 사학기관 현장에서의 회계감리 실시

5 최종검수회 개최

- 현장점검 완료 후 보고서의 재검토를 통해 오류 검증 및 품질 제고

6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회계감리 결과 사학기관 및 외부감사인 통보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회계감리단의 재검토

7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 개최

- 회계감리 수행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감리위원회 자문

8 사업 결과보고

- 회계감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학기관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사후시정 결과에 대한 이행 및 이행결과 점검

4. 주요 감리 항목

- 총 105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회계감리 실시

재무제표 적정성

감리항목 수: 78

결산서의 제출 및 공개, 예금계좌 구분 등 관리의 적정성, 자금 및 적립금 관리 및 운영 적정성 등

법령위반 여부

감리항목 수: 11

기본재산처분 등의 관할청 허가, 교비회계의 타회계전출 등

주석공시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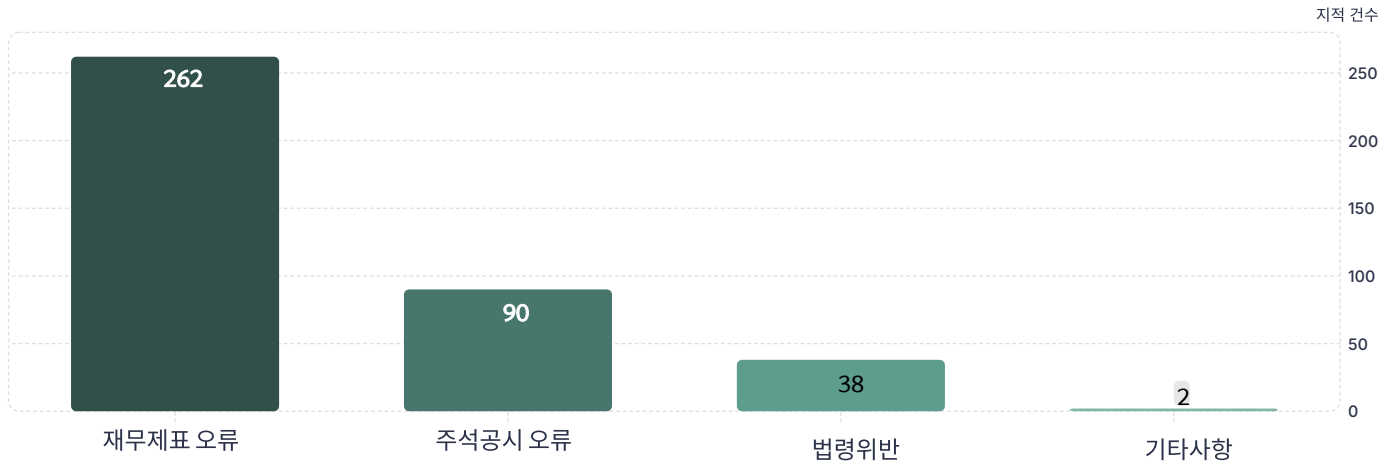
감리항목 수: 16

차입금 현황, 중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 등 납부 실태,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II. 2025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주요 점검 사례

1. 유형별 지적 사항

1) 지적 사항의 유형별 구분(총 392건)



2) 주요 부적정 사례 건수

구분	점검 항목	건수
재무제표 오류	미지급금 회계처리 누락	19건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오류	16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구분 오류	13건
주식공시 오류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공시 오류	13건
	적립금 현황 주식공시 오류	11건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주식 공시 오류	10건
법령 위반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구분 오류	16건
	교비회계 재원의 다른 회계 전출	10건
	경쟁입찰 대상 계약 수의계약 체결	7건
합 계		115건

2. 점검 항목별 오류사례

【 재무제표 오류 】

1) 미지급금 회계처리 누락

관련기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제28조(운영계산서), 제29조 제2항(운영계산의 방법),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서,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5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장학금 지급 시점에 장학금을 인식함에 따라 2025년 2월 발생한 교외장학금 283,261천원 및 교내장학금 13,606백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2024년 2월에 발생한 교외장학금 199,356백만원 및 교내장학금 12,664천원이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미지급금이 296,867천원, 교외장학금이 83,905천원, 교내장학금이 942천원, 전기 오류수정손실이 212,020천원 과소계상 되었음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2023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일 현재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이 752,252천원, 미지급금이 5,060천원, 직원퇴직금 및 교원퇴직금이 각각 29,030천원 및 718,162천원 과소계상 되었음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등록금 회계 상 2025년 2월 말 기준 확정채무인 교원급여, 교원각종수당, 직원급여, 장비관리비, 연구비의 미지급금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교원급여 325,945천원, 교원각종수당 200,772천원, 직원급여 145,970천원, 장비관리비 5,429천원, 연구비 2,150천원을 과소계상하고 미지급금을 680,266천원 과소계상함

2)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오류

관련기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제29조 제1항(운영계산의 방법), 제34조(감가상각), [별표 4]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33, 10.34, 10.36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사용기간이 1년인 전자도서에 대해 내용연수를 5년 적용하여 상각함. 그 결과 도서 및 도서감가상각누계액, 각각 1,528,194천원, 787,132천원 과대계상되고, 감가상각비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이 각각 333,492천원, 437,570천원 과소계상됨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일부 유형자산을 내용연수에 미달하여 상각하거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상각하였으며, 일부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누락함. 이에 따라 전기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을 8,689천원 과대계상하고, 당기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건물)를 673천원 과소계상하여 당기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이 8,017천원 과대계상 되었으며, 전기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을 3,867천원 과소계상하고, 당기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구축물)를 990천원 과대계상하여 당기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이 2,877천원 과소계상 되었으며, 전기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액을 448,817천원 과대계상하고, 당기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기계기구)를 176,437천원 과대계상하여 당기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액이 623,952천원 과대계상 되었으며, 전기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을 141,401천원 과대계상하고, 당기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집기비품)를 4,893천원 과대계상하여 당기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이 146,188천원 과대계상되어 고정자산폐기손실이 1,408천원 과소계상됨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19년 2회(250,000천원 및 350,000천원) 2023년 700,000천원, 2024년 260,12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구축 완료 및 사용을 시작하였으나 선금 지급 시점인 2018.02.28.(250,000천원), 2019.05.08.(350,000천원)부터 감가상각을 각각 개시함. 그 결과, 전기오류수정이익 583,333천원 과소 계상,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39,683천원 과대 계상,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이 628,016천원이 과대 계상되었음.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오류

관련기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제23조(재무상태표),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별표 2(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3(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재무제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4호」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본관 혁신지원사업 관련 실험실습실과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자본적지출 금액(건물)을 집기비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집기비품 1,525,259천원 및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88,205천원이 과대계상되었으며, 건물은 1,525,259천원 및 건물감가상각누계액 80,277천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는 107,928천원 과대 계상되었음. 또한, 교비회계는 해당공간이 준공되었는데도, 관련 건설중인자산금액 176,859천원 중 164,859천원을 본계정(건물)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중 일반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 12,000천원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여, 건설중인자산은 176,859천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건물이 164,859천원, 건물감가상각누계액 8,677천원, 일반용역비 12,000천원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는 8,677천원 과소 계상되었음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보수나 단순 유지·관리 목적이 아닌 본관 1층, 5층 공유협력형 오픈캠퍼스 리모델링 건축공사 지출금액을 건축물관리비로 인식함에 따라, 건축물관리비 537,511천원이 과대 계상되고, 건물이 동액만큼 과소 계상되고,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누계액이 각각 26,435천원 과소 계상됨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대운동장 인조 잔디 공사대금 454,312천원을 기타시설관리비로 계상하여, 구축물이 동액만큼 과소 계상되고 당기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및 구축물감가상각비누계액이 각각 5,679천원 과소 계상되었음

【주석공시 오류】

1)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오류

관련기준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8조(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 별지 제4호(8. 특수관계자 현황 및 특수관계자 거래, 13.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 우발자산과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현황)

대상회계: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는 특수관계자인 (주)○○와 전북일보 전광판 광고료, 인터넷 배너 광고료 등의 지출로 홍보비 414,314천원, ○○아카데미 강의실 리스임차료 19,800천원, 일반용역비 12,000천원, 학생지원비 6,600천원, 창업보육센터, 평생교육원 및 ○○아카데미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 사옥을 임차함에 따라 지출한 임차보증금 3,047,175천원,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입받은 산학협력단 전입금 526,531천원이 있으나, 산학협력단을 특수관계자 현황에서 누락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중 홍보비 등 이외의 해당 주석공시를 누락하였음

대상회계: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이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학교법인일반업무회계는 설립임원인 유○○ 총장의 배우자 김○○에 대한 장기차입금 407,600천원,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장기차입금 349,027천원,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장기차입금 1,775,972천원을 유○○ 총장의 장기차입금으로 주석공시하여 유○○ 총장의 장기차입금을 2,532,598천원만큼 과대표시하고, 배우자 김○○와 (주)○○의 장기차입금을 각각 407,600천원, 349,027천원만큼 주석에서 누락하였음.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미지급금(임대보증금 관련 이자비용 460,932천원, 기타채무원금 및 이자비용 387,507천원) 총 848,438천원을 주석에서 누락하였음.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는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임대보증금 1,000,000천원 및 유○○ 총장의 미지급금 517천원을 주석에서 누락하였음.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는 유○○ 총장의 미지급금 3,276천원을 주석에서 누락하였음

대상회계: 법인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교비회계는 건물을 특수관계자 (주)○○의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음

2) 적립금 현황 주식공시 오류

관련기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8조(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 제1항(별지 제4호 6.적립금 현황: 적립금 구분별 증감 내역 및 적립재원, 사용내역 등)

대상회계: 교비회계(비등록금)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임의건축기금의 적립액 중 350,000천원은 등록금회계로부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을 적립재원으로 사용하여 증가하였으나 적립재원을 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으로 기재하여 주식 공시에 오류가 있음

대상회계: 법인일반업무회계

발견사항 :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는 임의건축적립금 318,000천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주식 공시를 누락함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적립금의 잔액만 공시하고, 중요한 재무정보인 적립금 구분별 증감내역 및 적립재원, 사용내역 등을 공시하지 않음

3)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주식 공시 오류

관련기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8조 (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 별지 제4호(13.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 우발자산과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현황)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은 하자, 계약, 선금, 입찰보증 총 1,018,567천원에 대한 주식공시 누락함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대학교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서」 제41조에 따라 기숙사 관리운영기간 동안 ○○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에게 총 3,996,335천원을 운영비(청소인부 2인, 시설인부 2인)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25년 2월 28일 현재까지 지원액은 1,141,278천원, 향후 지원 예정액은 2,855,057천원이나, 해당 약정사항을 중요한 재무정보로 주식공시하지 않음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윤○○이 제기한 교수 재임용거부 취소소송(2001두****)에서 최종 패소(대법원, 2024.6.17.)함에 따라 등록금회계 상 미지급 급여와 판결에 따른 법정 이자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금액은 미정)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주식으로 공시하지 않음

[법령 위반]

1)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구분 오류

관련기준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이월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미사용이월 자금), 서식 4의16(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재무 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비등록금회계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별지 서식 4의16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상 기타이월로 구분하여야 할 금액을 명시이월로 분류함에 따라, 명시이월금을 32,048,816 천원 과대계상하고 기타이월금을 동액만큼 과소계상함

대상회계: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등록금회계)는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별지 제4호의 16서식의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상 사고이월로 구분하여야 할 기계기구매입비등 104,760천원 및 기타이월로 구분하여야 할 학과운영 사업비 미사용 이월액등 230,247천원을 명시이월로 분류함에 따라, 명시이월금이 335,007 천원 과대 계상되고, 사고이월금과 기타이월금이 과소 계상됨.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는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별지 제4호의 16서식의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상 유동부채인 미지급금으로 분류하여 미사용 이월자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222,565천원을 명시이월금으로 표시하고, 기타이월로 구분하여야 할 국제교류활동 지원사업 행사비등 45,748천원을 명시이월로 분류함에 따라, 명시이월금이 268,313천원 과대 계상되고, 기타 이월금이 과소 계상됨

대상회계: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대학교 등록금회계)는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별지 제4호의 16서식의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상, 이사회에 명시이월로 상정하지 않고 내부기안도 없어서, 명시이월의 절차 미비로 기타이월로 구분하여야 할 LMS전면개편자금 1,120,000천원을 명시이월로 분류함에 따라, 명시이월금을 1,120,000천원 과대 계상하고 기타이월금을 1,120,000천원 과소 계상함

2) 교비회계 재원의 다른 회계 전출

관련기준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 제27조, 별표 2, 별표 3,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유의사항」 제7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및 회계 관리 안내서(2023.11)

대상회계: 법인일반업무 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학교법인 ○○학원 일반업무회계는 학교의 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식당의 운영자인 (주)○○로부터 수령한 243,984천원의 기부금(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기탁서에 기재)을 학교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법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일반회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한 후 전액 경상비전출금으로 하여 학교로 전출함

대상회계: 법인일반업무 회계

발견사항 : 학교법인 ○○학원은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성○○의 파면처분 무효 등의 소송으로 인해 법회회계에서 지급하였어야 할 244,742천원이 ○○대학교의 계좌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되었음에도, 2024회계연도에 이를 잡손실로 인식하고 미지급금을 계상한 뒤 교비회계로 즉시 이체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체하고 있음

대상회계: 교비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여야 할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퇴직금 중 일부 금액(23,120천원) 및 수당 중 일부 금액(17,167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함에 따라, 퇴직금 23,120천원, 직원 각종수당 17,167천원이 과대 계상되고, 미수금 40,287천원이 과소계상됨

3) 경쟁입찰 대상 계약 수의계약 체결

관련기준 : 「사립학교법」 제33조(회계규칙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유의사항」 제7조(재무제표 감사외확인사항) 제1항 제6호

대상회계: 교비회계(비등 록금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사(社)와 USD 7,250,000(약 9,900,000천원)의 ○○ E-Learning 컨설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대상회계: 부속병원회계

발견사항 :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대명동)는 '행정서식류등의 구입' 계약 199,977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상회계: 교비회계(비등 록금회계)

발견사항 : 교비회계는 총 계약 금액이 108,826천원으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LED 등기구 구입계약을 수차례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본 사례집은 2025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총 30개 사학기관(대학 19개교, 전문 10개교, 원격 1개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392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결산 분야가 262건(6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각 사학기관은 본 사례집을 참고하여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